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골 목 경 제 과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 제안이유

가. 경쟁력 있는 창업자의 구도심 진입을 지원하고, 상생점포의 시설 개선 및 상생임대 연계로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지속가능한 상권기반 조성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 제117조

나)「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다)「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

라)「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2) 필 요 성

구도심 핵심상권의 빈 점포 증가와 기존 점포의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신규 소상공인 유입과 기존 상권 유지를 위한 동시 대응 체계 마련 시급

다. 위탁 사무 내용 :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업무 전반

(1)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구도심 내 신규창업자 및 상생건물주 모집·관리

(3) 창업 컨설팅 및 후속 사업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4) 사업 집행·정산 및 추진실적·성과 관리

라. 위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7. 12. (1년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500백만원 (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1,500	1,200	75	225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일자리경제과-28444(2026.9.30.)호

3. 부서의견

○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3)「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4)「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 편성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와 협업화 지원
4.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5.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7. 소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 시장은 제4조 및 제11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27년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위탁 시 사업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사업비는 연간 사업량 및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함

나. 인건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사업비	1,200	1,200	1,200	-	-	3,600
	○ 간접비	75	75	75	-	-	225
	○ 인건비	225	225	225	-	-	675
	계	1,500	1,500	1,500	-	-	4,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1,500	1,500	1,500	-	-	4,500
민 간						
기 타						
합 계	1,500	1,500	1,500	-	-	4,500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자 : 골목경제과 골목경제기획팀 이흔주(☏480-260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목	세목	예산
인건비 (15%)	참여 인력 인건비	225,000
직접비 (80%)	창업지원비	600,000
	상생 건물주 지원비	500,000
	교육 및 컨설팅비	21,000
	사업홍보 및 네트워킹비	35,000
	전문가활용비	12,000
	회계 정산비	2,500
	국내여비	2,000
	인쇄복사비	1,500
	회의비	2,500
	사무용품비	1,000
	연구수당	22,500
간접비 (5%)	기관운영경비	75,000
합계		**1,500,000**

소 관 부 서		골목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박 영 희
	팀 장	강 유 현
	담 당 자	이 흔 주 (480-2602)